

김병연(김삿갓)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(건물)매입을 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2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2. 2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2. 13

(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길중

나. 제안사유

- 김병연(김삿갓)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(건물)를 매입하여 지역 명성에 걸맞는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활용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취득계획대상 토지(건물)

구분	토지(건물)소재지		지번	지목	취득면적 (㎡)	재산가액 (공시지가)	비고
	읍면	리					
계			1필지 (3동)		1,217 (140.2)	9,553천원 (2,153천원)	토지(건물)
토지	동북	구암	647	대지	1,217	9,553	
	"	"	647	-	73.3	1,126	
건물	"	"	"	-	47.6	731	
	"	"	"	-	19.3	296	

○ 취득사유

- 지역명성에 걸맞는 문화유적지 조성
-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거점 증대

○ 관계법령 및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- 본 안건은 김병언(김삿갓)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명성에 걸맞은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선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김병언(김삿갓)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(건물)매입을 위한
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